

안산대학부설석학유치원 운영규칙

1996년 3월 9일 제정

1998년 3월 6일 개정

2003년 6월 30일 개정

2004년 8월 27일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학교법인새빛학원 정관에 의거하여 안산대학부설 석학유치원(이하 “본 원”이라 한다)의 업무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업무) 본 원은 유아들에게 이상적인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2장 조 직

제3조 (교직원) 본 원은 다음의 교직원을 둔다.

1. 원 장 : 1인
2. 원 감 : 1인
3. 교 원 : 정교사 - 학급당 1~2인
4. 직 원 : 정관에서 정한 수

제4조 (원장) ①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며,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원장은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 (원감) ①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,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원감은 교원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.

제6조 (교원) ①교원은 원장 및 원감의 명을 받아 원아를 교육한다.

②교원은 초·중등 교육법상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7조 (직원) ①직원은 본 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

②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인사 등) 본 원의 교직원의 인사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초·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과 학교법인새빛학원 정관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장 운 영

제9조 (운영계획) 원장은 매년 1월중에 다음 학년도 예산 편성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10조 (운영사항)①본 원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 책임하에 결정하여 시행한다.

②법인은 본원에 대한 지휘·감독업무의 일부를 관계규정의 범위 안에서 총장에게 위임한다.

③원장은 시설운영현황을 법인 학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운영위원회) ①본 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 수는 7명으로 한다.

1.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본 원의 재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본 원에 관련되는 주요사항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총장·원감·유아교육과 학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장 재정 및 회계

제12조 (재정) 본 원의 재정은 수업료 및 각종 징수금과 안산대학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
제13조 (회계연도) 본 원의 회계연도는 안산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적용된 안산대학부설석학유치원 운영규정은 이 규칙에 의해 적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